

# 프랑스 · 일본의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

홍보전산부 차장대우 정진형

## □ 목 적

- 쇠고기 Traceability를 앞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실시사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 중인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의 분계점 개선 및 효율적 확대방안 강구
- 앞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될 브랜드경영체 관계자에 대해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시범사업 조기 정착 유도

□ 조사기간 : 2005. 5. 2 ~ 2005. 5. 12(10일간)

□ 조사단(8명) :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박상연 사무관외 7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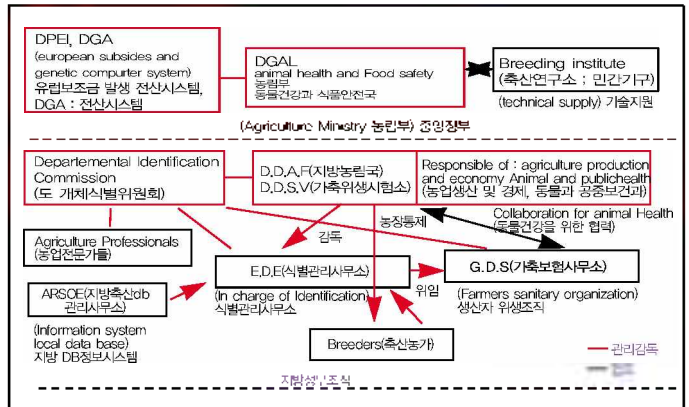
## 1. 프랑스

### 가. 연혁

- 1966년 축산진흥법을 제정하여 가축의 개체식별의 필요성 규정
- EU위원회 회의 「소의 증명·등록 시스템의 확립 및 쇠고기·쇠고기

제품의 표시에 관한 규칙」(No.820/97)에 따라 正수(98-764, 98.8.28)을 제정하여 1998.9월부터 농장부터 도축에 이르기까지 생산단계의 Traceability를 의무화

- 또한 2000년1월7일 이전에는 지역별로 DB를 운영했으나, 이후는 국가DB를 구축, 일관되게 관리하고 있음.
- EU위원회가 2000.7월에는 「쇠고기의 의무표시제도에 관한 규칙」(No. 1760/2000)을 이사회에서 채택함으로써 쇠고기의 유통단계에까지 Traceability system이 확대되었음.
- EU에서는 2005년1월부터 「식품법의 일반원칙」에 따라 유통 판매되는 모든 식품과 사료에 대해 Traceability를 의무 적용하고 있음



## 나. 추진체계

- 농림부 동물건강과식품안전국(DGAT) : 중앙정부에서 동물의 개체식별업무를 총괄하면서 국가DB 관리
- 지방농림국(DDAF) : 지자체(Department, 縣) : 우리나라의 道와 郡의 중간 정도로 전국에 100개가 있음 행정조직으로 지도감독 담당
- 축산식별관리사무소(EDE) : 지방(Department)에 있는 민간단체로, 주로 농업회의소에 배속되어 있으며, 지역별 개체식별 관리 및 대농민 축산기술서비스를 담당

## 다. 생산단계 이력관리

- 귀표의 장착은 출생일로부터 7일(EU규정은 21일) 이내에 농가가 직접 양쪽 귀에 장착하고 관할 EDE에 신고하여야 함

귀표번호 설명	
S	: 재발급시 사용
FR	: 국가표시
71	: 현표시
1256	: 지역표시
	: 바코드표시
7891	: 일련번호

프랑스 귀표

- EDE는 농가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14일 이내에 패스포드를 발급하여 농가에 우편으로 발송
- 출생신고 전 소는 국가DB에 조치하여 이상이 없을 때 패스포드를 발급하며, 패스포드는 이동, 도축될 때까지 소와 함께 있어야 하고 이동경로를 기록하여야 함

- 패스포드 전면에는 개체식별번호이외에 성, 품종, 출생일, 출생농장번호, 부모 품종, 이미소 개체식별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, 반드시 위생검사증빙서가 첨부되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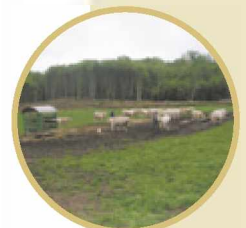
## 라. 유통단계 이력관리

- 도축장에서 소의 귀표와 패스포드의 식별번호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, 도축장의 계류번호(도축번호)와 연계시킴
- 4분체에 도축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, 구매자가 계산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이 가능토록 함
- 여러 마리의 지육을 하나의 로트로 구성하여 도매시장 또는 가공장, 정육점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음
- 도축이후의 정보관리는 세무적으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고기의 흐름을 계산서로 추적이 가능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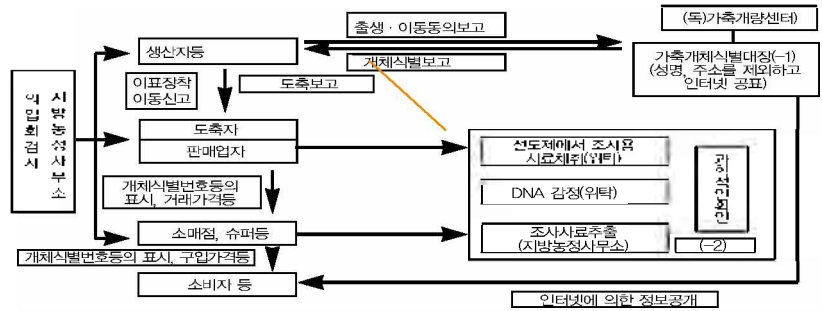
## 2. 일본

### 가. 연혁

- 축산선진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97년 4월부터 04년까지 귀표번호체계의 정비 및 전산화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
- 97년 4월 최고기 이력제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
- 01년 9월 광우병 발생에 따른 국내산 최고기의 소비 급감으로 안전·안심확보방안 마련
- 2002년 6월 「소의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정
- 2003년 12월 생산단계 의무화 실시
- 2004년 12월 도축이후 유통단계 의무화 실시



## 나. 추진체계



- (\*) 가축개량센터(독립행정법인)가 소의 정보를 기록 관리  
 (2) 1. 식육각부협회에서 도축된 소도체에서 DNA 조사용 시료채취  
 2. 지방 농정사무소 직원의 압회하에 소매점에서 DNA 검사용 시료채취  
 3. 도체위 부분육 시료의 동일성 DNA 감정에 의해 확인

### ○ 농림수산성

- 귀표의 관리 및 장착은 축산국에서 담당하였으나,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본격 추진되면서 '03.7월부터 소미·안전국에서 담당

### ○ 지방농정국(농정사무소)

- 식량청 소속 인원 640명을 현 단위 7개 지방농정국과 179개 농정사무소에 배치
- 소 관리자, 도축자, 판매업자 등에 대한 지도·감독
- 기존 소에 대한 정보입력 및 수정 등('04.2월말까지)

### ○ (독)가축개량센터(정부위탁업무수행)

- 소 개체식별 대장의 작성 및 기록에 관한 사무
- 소 개체식별대장에 기록된 사항의 공표에 관한 사항
- 개체식별 번호 체제관리 및 귀표 공급 등

### ○ (사)식육각부협회(우리나라 축산물등급판정소에 해당)

- 도축장에서 모든 지육으로부터 보관용 DNA 샘플을 채취하여 가축개량기술연구소에 전달

### ○ 가축개량기술연구소((사)가축개량사업단 소속)

- 식육각부협회에서 보내온 보관용 DNA 샘플보관
- 지방농정사무소 등이 유통단계(부분육, 정육)에서 채취한 샘플과 DNA 동일성 검사 실시

## 다. 생산단계 이력관리

### ○ 국가(가축개량센터에 사무위임)에 의한 소 개체식별대장작성

- 기록사항 : 개체식별번호, 출생연월일, 암수의 구별, 어미 소의 개체식별번호, 출생에서 도축할 때까지의 사육지와 사육자, 전출·전입연월일, 도축연월일 또는 사망연월일, 기타(수입우의 수입연월일)

### ○ 소의 소유자 등 「관리자」에 의한 출생·수입신고

### ○ 양도·양수 신고

- 연월일, 상대방 성명 등 신고

- ※ 귀표의 장착 : 국가가 정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를 장착, 귀표탈착, 귀표가 없는 소의 양도·양수 금지

### 라. 도축단계 이력관리



- 도축업자는 가축개량센터에 도축 연월일 등 제출
- 지육을 인도할 곳에 개체식별번호 등 전달
  -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것과 대체할 도축번호 표시
  - 도축번호 등을 표시할 경우, 지육을 인수한 자에게 이에 대응하는 개체식별번호를 명확히 한 서면을 교부

○ 전달정보의 기록·관리

**마. 유통단계 이력관리**

- 대상이 되는 쇠고기(특정쇠고기)
  - 쇠고기 개체식별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로부터 유래된 쇠고기
- 대상 사업자
  - 쇠고기를 주 재료로 하는 특정요리 (야키니쿠, 샤브샤브, 스키야키, 스테이크)를 제공하는 사업자
- 판매업자 등이 지켜야 할 조치
  - 판매지에 개체식별번호 등의 전달
  - 전달정보의 기록·보관

**□ 출장 의견**

**1. 귀표 관리체계 개선 필요**

- 가. 송아지생산안정제 등 다른 정책사업과의 연계성 때문에 한쪽 귀에만 귀표를 장착하였으나, 귀표 탈락율이 높아(10%이상) 양쪽에 장착하도록 개선
- 나. 전국의 일련번호로만 되어 있는 개체식별번호를 프랑스의 경우처럼 지역번호를 가미(예시: 우편번호+일련번호)하여 이동시 지역별 관리가 용이하도록 번호체계 개편 검토

**2. 소 관련 전산 DB 연계방안 모색 필요**

- 가. 전면 실시시에는 산재해 있는 소 관련 정보가 농가번호, 개체식별번호에 의거 이력추적시스템 DB로 필요한 정보가 집결되어야 실질적인 이력관리가 용이함.
- 나.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입력내용이 상당히 중복되는 송아지생산안정제, 한우개량육성사업(농협중앙회) 등 사업부터 연계 추진방안 모색

**3. 일본, 프랑스의 경우, DB관리(귀표 부착, 입력 포함), DNA검사 및 지도감독 기능이 각각 분리되어 조화를 이룸**

- 가. DB관리 및 DNA검사는 민간 또는 전문기관에서 담당
- 나. 지도감독은 중앙 및 지방 공무원 조직이 담당
- 다. 기능의 분리로 업무추진에 신속성, 일관성,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나, 별 분제가 없고 오히려 DB관리는 민간이 담당해야 정부규제가 아닌 농가의 필요에 의한 제도라는 인식을 가진다는 의견이 있었음.

**4.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완책 강구**

- 가. 일본의 경우 국가 DB를 관리하고 있는 (독)가축개량센터 사무실에는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음.
- 나. 프랑스의 경우도 개인정보 공개 시 책임자 엄중 처벌

